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재난 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약의 체결 거부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해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안 제30조제3항, 제82조제3항제9호),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담보 제공 제한 내용을 추가하며(안 제30조제4항), 부칙에 법률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제3항 중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을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으로, “체결을 거부할”을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압류할”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로 한다.

안 제82조제3항제9호 중 “관리주체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한”을 “관리주체의 가입 요청 또는 관리주체와의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0조(보험 가입) ① · ② (생략)	제30조(보험 가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보험 가입)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③ <u>보험사업자는</u> <u>관리주체가 제1항</u> <u>에 따른 책임보험</u> <u>에 가입하려는 때</u> <u>에는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사유가 있</u> <u>는 경우 외에는 계</u> <u>약의 체결을 거부</u> <u>할 수 없다.</u>	③ ----- ----- ----- ----- ---- <u>정당한 사유</u> <u>없이 책임보험의</u> <u>가입 요청 또는</u> ---- ----- <u>체결·갱신을</u> <u>거부하거나 계약을</u> <u>해제·해지할</u> ----- --.
<u><신설></u>	④ <u>제1항에 따른</u> <u>책임보험의 보험금</u> <u>지급청구권은 양도</u> <u>또는 압류할 수 없</u> <u>다.</u>	④ ----- ----- ----- ----- <u>압류하거나</u> <u>담보로 제공할</u> ---- -----.
제82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u><신설></u> ④ · ⑤ (생략)	③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보험사업자가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관리주체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u> ④ · ⑤ (현행과 같음) <u>부칙</u>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③ ----- ----- ----- ----- -----. 1. ~ 8. (개정안과 같음) 9. ----- ----- -----<u>관리주체의 가입 요청 또는 관리주체와의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u>----- -----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보험 계약의 체</u>
---	---	--

		<u>결 거부 등에 관한</u> <u>적용례) ① 제30조</u> <u>제3항의 개정규정</u> <u>은 이 법 시행 당</u> <u>시 가입된 보험에</u> <u>대해서도 적용한다.</u> <u>② 제30조제4항의</u> <u>개정규정은 이 법</u> <u>시행 이후 보험금</u> <u>지급청구권을 양도</u> <u>또는 압류하거나</u> <u>담보로 제공하는</u> <u>경우부터 적용한다.</u>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56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윤건영 · 양부남 · 김 윤
차지호 · 진성준 · 박정현
이광희 · 이해식 · 김성희
정춘생 · 송기현 · 민병덕
고민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
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
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제82조제3항제9호).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약의 체결 거부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해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안 제30조제3항, 제82조제3항제9호),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담보 제공 제한 내용을 추가하며(안 제30조제4항), 부칙에 법률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험사업자가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관리주체의 가입 요청 또는 관리주체와의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보험 가입)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30조(보험 가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보험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u>
<u><신 설></u>	<u>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u>
제82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u><신 설></u>	제8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8. (현행과 같음) 9. <u>보험사업자가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관리주체의 가입 요청 또는 관리주체와의 계약의 체</u>

④ · ⑤ (생 략)	<u>결 ·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 을 해제 · 해지한 경우</u> ④ · ⑤ (현행과 같음)
-------------	---